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재나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경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대한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4. 15.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6918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58192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6918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6.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9나5819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2095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이유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B가 원고의 정신 장애를 악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B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이미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광양시 E 대 233.5㎡

2. 전라남도 광양시 E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F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슬래브 및 샌드위치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

1층 유흥주점 99.08㎡ 일반음식점 68.58㎡ 주차장 15.4㎡

2층 유흥주점 162.22㎡

3층 사무실 162.22㎡ 끝.